

의안번호	2126639
의 퇴 인	강민정 의원
회 답 일	2024.05.09.
추 계 번호	24C023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게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영유아 보육제공 및 보육기반 지원 등을 위하여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05억 4,000만원, 2029년 95억 6,5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95억 1,200만원(연평균 99억 5,7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30	—	—	—	—	30	6
장애영유아의 보육 제공 (안 제28조의2제3항)	10,540	10,163	9,585	9,629	9,565	49,482	9,951
합 계	10,570	10,163	9,585	9,629	9,565	49,512	9,957

주: 1) 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2) '보수교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값으로 가정 등이 변동될 경우 결과값은 변경될 수 있음

3) 교사 대 아동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반 연령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를 추가지원할 경우 결과값이며 가정 등이 변동될 경우 결과값은 변경될 수 있음

4) '각 세별 영유아인구수' 대비 '어린이집 재원 장애아동 중 일반 연령반 편성 아동수'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명목임금상승률 및 통계청의 장애인구추계 결과값을 적용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책임)	(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인력 및 시설·설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제1항)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영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8. <u>장애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및 시설·설비의 설치에 관한 컨설팅</u>	
3	안 제8조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2항)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의2. <u>장애영유아의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분석</u>	의무규정
4	안 제9조의2(보호자 교육)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아동학대 예방 및 <u>장애영유아의 보육</u>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5	안 제9조의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하 “보육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u>제15조의6에 따른 장애영유아용 시설·설비의 설치 현황에 관한 자료</u> 7. <u>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영유아의 보육 제공에 관한 자료</u>	의무규정
6	안 제15조 (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u>장애영유아용 시설·설비의 설치</u>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및 <u>제15조의6</u>에 따른다.	의무규정
7	안 제15조의6 (장애영유아용 시설·설비의 설치)	<u>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애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u>	의무규정
8	안 제23조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제4항)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의2. <u>장애영유아 보육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증진</u>	의무규정
9	안 제23조의2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3항)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의2. <u>장애영유아 보육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증진</u>	의무규정
10	안 제25조의2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부모모니터링단)	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영유아의 부모 또는 장애영유아 보육·보건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3. <u>장애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인력 및 시설·설비 현황 모니터링</u> (제3항) 부모모니터링단은 <u>12명</u> 이내로 구성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의무규정
11	안 제28조의2 (장애영유아의 보육 제공 및 보육기반 지원)	(제1항) 장애영유아의 보호자는 장애영유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영유아의 보육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장애영유아의 개별적 장애 특성 및 어린이집 이용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을 연계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장애영유아 보육 제공 요청과 관련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영유아 보육 제공 요청과 어린이집 연계, 제3항에 따른 지원, 제4항에 따른 안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의무규정
12	안 제28조의3 (장애영유아 보육 제공 요청에 대한 거절 금지)	<u>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 제공 요청(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영유아에게 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u>	의무규정
13	안 제29조(보육과정)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u>표준보육과정(장애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표준보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u>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다)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4	안 제51조의2 (업무의 위탁)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제3호의2의 업무는 <u>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u> 3의2. 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영유아 보육 제공 요청의 접수 및 어린이집의 연계 업무	재량규정
15	안 제54조(벌칙)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4.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 제공 요청을 거절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책임)	×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인력 및 시설·설비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정지출 증가분을 산출하기 곤란하여 추계에서 제외
2	안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	· '24.8. 시행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과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에는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4년 현재 일부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에 따라 추가될 '장애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및 시설·설비의 설치에 관한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컨설팅'업무를 신규 인력이 아닌 기존 인력이 업무 조정을 통하여 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재정소요 증가여부가 불분명하며, 현 시점에서 구체적 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에 한계가 있음
3	안 제8조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	· 한국보육진흥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에 따라 추가될 '장애영유아의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분석' 업무를 기존 인력이 업무조정을 통하여 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재정소요 증가여부가 불분명하며, 현 시점에서 구체적 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에 한계가 있음
4	안 제9조의2(보호자 교육)	×	· 현행 법 제9조의2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영유아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부모보육(보호자교육)을 위한 116백만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개정안의 업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신규인력 채용' 등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이나 기존 부모교육 관련 예산 총액 내에서 지원사업이 운영되거나 기존 인력이 업무조정을 통하여 담당할 가능성도 있어 재정소요 증가여부가 불분명하며, 이에 현 시점에서 구체적 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에 한계가 있음
5	안 제9조의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의 '장애영유아 보육에 관한 자료'는 '24년 현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아동정보(장애아기본반/장애아방과후반/누리장애아반)에서 조회가 가능함 · 또한 동 제출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의 '장애영유아 용 시설·설비 설치현황'의 경우 '어린이집 설치인가정보'카테고리에 시스템 일부개선을 통하여 구현 가능하며, 이는 매년 편성되어 있는 시스템 개편 예산 등('24년 기준 2,500백만원)으로 조치 가능함 · 이에 안 제9조의3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동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가재정소요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6	안 제15조 (어린이집 설치기준) 안 제15조의6	×	·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서 갖추어야 할 설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본 추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장애영유아용 시설·설비의 설치)		서에서는 동 [별표]가 개정안에 따른 교육부령으로 정해진다고 보아 추계에서 제외함 ¹⁾
7	안 제23조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안 제23조의2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	
8	안 제25조의2 (부모모니터링단)	×	· 개정안에 따라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원으로 장애영유아의 부모 또는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이 추가되고 전체 인원도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증원 규모(2명)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사업경비 내에서 추가되는 위원수당 등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재정소요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9	안 제28조의2 (장애영유아의 보육 제공 및 보육기반 지원) 안 제28조의3 (장애영유아 보육 제공 요청에 대한 거절 금지)	○ (제3항 일부)	
		×	· (어린이집 연계 등) 안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장애영유아 보호자의 보육 제공 요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을 연계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여, 이를 위한 신규 인력과 재원이 필요하게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존 인력의 업무 재배치 등으로 동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 구체적 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에 한계가 있음 · (시설·설비 설치 지원)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갖추어야 할 설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1,800천원/㎡의 신축비, 30,000천원/개소의 시설 개·보수비(이상 장애전문어린이집 중 일부), 3,000천원~4,000천원/개소의 장비비(장애아 전문 또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중 일부)가 지원되고 있음 ²⁾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동 사업비 이외에 시설·설비를 위한 지원이 추가될 수 있으나 지원의 세부사항이 교육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구체적 지원사항 및 관련 재정소요 예측에 한계가 있음
10	안 제29조(보육과정)	×	·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4]는 표준보육과정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표준보육과정’에 ‘장애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표준보육과정’을 포함시킬 경우 개정을 위한 연구 및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자료제작 등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의 ‘장애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표준보육과정’을 “별도”로 개발할 경우 '24년 현재 적용 중인 제4차 표준보육과정 수립시 사용되었던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준용하여 소요 예산을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개정안은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표준보육과정을 “포함”한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하여 현 시점에서 이를 포함한 전체 연구용역비 예상하기 어려움
14	안 제51조의2 (업무의 위탁)	×	· 개정안에 따라 ‘장애영유아 보육 제공 요청의 접수 및 어린이집의 연계업무’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되고 이를 위한 신규 인력 배치 등을 위한 보조금 규모가 증가할 경우 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 · 다만, 동 업무가 위탁업무로 실시될지 여부 및 추가된 업무를 신규 인력으로 담당하게 할지 여부, 이로 인한 보조금 추가교부 여부 등을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워 추계에 한계가 있음
15	안 제54조(벌칙)	×	· 개정안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재정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의 증가폭을 예상하기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본 추계에서는 ①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장애영유아 보육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증진’ 내용 추가(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②장애영유아의 보육 제공 및 보육기반 지원(안 제28조의2제3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안 제23조 등)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장애영유아 보육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별도의 관련 과목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현행 일부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영유아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영유아 발달지연과

1) 다만, 개정안에 따라 제정될 교육부령이 현행 시행규칙 상 [별표]보다 강화된 내용을 규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2) 자료: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부적응 행동지도'과목이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별도의 '장애영유아 보육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증진' 과목이 신설되는 것으로 가정함

- 본 추계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 83개 보육기관에 표준보수교육과정으로 제공해야 할 '교육컨텐츠 개발' 및 '메뉴얼 제작·보급'이 실시되는 것으로 함
- (안 제28조의2제3항)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³⁾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⁴⁾
- 2024년 현행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으로 구분되고, 이는 다시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으로 나뉘며 각각의 유형별로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가 다르게 지원되고 있음

[표 2]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분류별 보육료 및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현황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지원요건 5)충족	장애아 부모보육료, 장애아반 담임교사 인건비(80%)	장애아 부모보육료, 장애아반 담임교사 인건비(80%)	장애아 부모보육료, 연령반별 담임교사 인건비
	미충족	연령반별 부모보육료, 연령반별 담임교사 인건비(영아반 80%, 유아반 30%)		
인건비 미지원	지원요건 충족	해당시설 없음	장애아 부모보육료, 장애아반 담임교사 인건비	장애아 부모보육료, 장애아 기관보육료
	미충족		연령반별 부모보육료, 연령반별 기관보육료	

주: 1) 인건비지원어린이집의 장애아반 담임교사 인건비는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80% 지원
 2) 연령반별 보육교사 인건비는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영아반 80%, 유아반 30%를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 본 추계서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로 교사 대 아동비율(1: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⁶⁾ 일반 연령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요건 충족시와 동일한

3) '장애영유아'에 대한 자격은 개정안 시행 이후 안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새로이 정해질 수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누리(3~5세)과정을 포함한 현행 '장애아보육료 자격'을 보유한 장애영유아로 가정함

4) 안 제2조제1의2호에 따라 장애영유아는 '장애인인 영유아' 또는 별도로 인정된 '영유아'이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는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므로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 '장애아방과후반'은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5)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현재 1명만 재원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6) 이외에도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도 미충족 사유에 해당하나 사유별 통계가 부재하고,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과정'이수 조건만을 충족시 전담교사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추계서에서는 미충족인원 전원을 1:3 요건 미충족 인원으로 가정함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될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함⁷⁾⁸⁾⁹⁾

- (보육료) 1명이 재원한 반일 경우에도 일반 연령별 부모보육료가 아닌 장애아보육료가 지급되는 경우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인건비 지원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교사 대 아동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령반별 담임교사 인건비(30%지원)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유아반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장애아반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인 80%로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를 추정¹⁰⁾¹¹⁾
 -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경우 '24년 기준 장애아반 교사 인건비로 1,790천원/월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이 금액과 기존 연령반별 기관보육료 차액을 추가재정소요로 추정하고, 일반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 기관보육료와 연령반별 기관보육료 차액을 추가재정소요로 추정함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에 신규로 재원하게될 장애영유아수가 증가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2024년 현재 누리(3~5세)과정을 포함한 ‘장애아보육료’ 자격을 가진 장애영유아를 개정안의 장애영유아 수로 보고, ‘각 세별 영유아인구수’ 대비 ‘어린이집 재원 장애영유아수 및 장애영유아 중 일반 연령반 편성 아동수’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정한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를 사용하며,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
- 7) '24년 현재 인건비 지원은 현원이 정원의 50%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 정원 대비 현원 충족여부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동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 8) 인건비에는 “특수교사 수당”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인건비 지원기준에 대한 일률적 가정이 어려워 본 추계서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24년 보건복지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의 연봉 지원금액(인건비 지원어린이집)과 '24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의 교사인건비 지원 단가 금액만을 지원대상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 9)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차액보육료”, “특수보육시책비” 등은 시·도의 결정사항이므로 현시점에서 구체적 예측이 어려워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10) 인건비 지원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반(0~2세)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어 장애아반 담임교사 인건비와 동일한 지원기준을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누리반(3~5세)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율 상승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11) 인건비 지원어린이집 중 일반어린이집의 누리장애아반(3~5세, 1:3비율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령반별 담임교사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으므로 인건비 보조율이 장애아반 담임교사 인건비와 동일하게 80%로 상향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반의 경우 기존 제도하에서 지원요건 충족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과 전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장애영유아수(1,895명, 2023.12.기준) 대비 본 반에 재원중인 아동수(12명) 비율 등을 고려하여 추계에서 제외하였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장애영유아 보육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증진’ 내용 추가에 대한 재정소요로 신설될 보수교육 과목을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 및 매뉴얼 제작·보급’ 비용을 추계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유사사례 소요비용을 사용함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사사례인 표준보육과정 과목 추가에 ‘교육컨텐츠 개발비’ 2,000만원, ‘매뉴얼 제작·보급’에 1,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며, 이에 본 추계서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2025년에 총 3,000만원이 집행된다고 가정함

[표 3]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30	-	-	-	-	30	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예상되는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재정소요를 추계
 - **(보육료)** 전제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본 추계서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로 교사 대 아동비율 미충족으로 장애아반이 아닌 일반 연령반에 편성된 아동에게 ‘부모보육료’가 아닌 ‘장애아 보육료’를 지급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
 - **(보육료 차액)** '24년 현재 아동 1인당 ‘장애아 보육료’는 587천원/월이며, 일반 ‘부모보육료’는 0세 540천원/월, 1세 475천원/월, 2세 394천원/월, 3세 이상 280천원/월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연령반에 편성된 아동에게도 장애아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24년 기준 매월 0세 47천원, 1세 112천원, 2세 193천원, 3·4·5세 307천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임¹²⁾¹³⁾

12) 각 보육료가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정한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함

13) 연령혼합반 및 1~2월생 아동의 경우 등에는 같은 반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지급되는 부모보육료 금액이 다를 수 있으나 관련 통계 부족으로 각 세반에 편성된 아동에게 같은 금액의 부모보육료가 지급되는

- (연령반 편성 아동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의 '23년 12월 기준 연령반 편성 아동수¹⁴⁾가 각 세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추계기간동안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기간동안 유형별 어린이집에 재원할 장애영유아수를 추정함
- 이를 바탕으로 추계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표 4] 장애영유아 보육제공 등에 따른 '보육료' 관련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안 제28조의2 및 안 제28조의3 (보육료)	3,074	2,952	2,853	2,785	2,771	14,435	2,887

주: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각 세별 인구수 대비 '23.12.기준 일반 각세별 연령반에 편성된장애아보육료 자격 아동수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산출
 2) 1명의 장애영유아가 재원하는 경우에도 연령반별 부모보육료가 아닌 장애아보육료가 지원된다는 가정하에 산출
 3) 장애아보육료 및 부모보육료는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인건비) 전제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본 추계서에서는 인건비 지원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 연령반(3~5세) 담임교사에 대한 인건비 추가지원금액, 인건비 미지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반 담임교사 인건비와 연령반별 기관보육료의 차액, 인건비 미지원 일반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 기관보육료와 연령반별 기관보육료 차액을 추가재정소요로 추정함
 - (인건비 지원어린이집 교사인건비) 인건비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유아(누리과정) 연령반 편성 아동을 담당하는 담임교사에게도 장애아반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인 80%를 보조하는 경우 '24년 기준 교사 1인당 연간 1,655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¹⁵⁾되며, 이에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명목 임금상승률을 적용
 -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 교사인건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경우 '24년 기준 장애아반 교사 인건비로 1,790천원/월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이 금액과 기존 연령반별 기관보육료 차액을 추가재정소요로 추정하고¹⁶⁾, 일반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 기관

것으로 가정함

14) 혼합반에 재원중인 각세별 재원아동수에 대한 통계부족으로 1세반에는 0/1세 연령혼합반, 2세반에는 1/2세 연령혼합반, 3세반에는 2/3세 연령혼합반, 4세반에는 3/4세 연령혼합반, 5세반에는 4,5세 이상반 인원을 포함하여, 0세반 37명, 1세반 95명, 2세반 223명, 3세반 149명, 4세반 315명, 5세반 303명으로 계산함

15) 보건복지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의 단가를 적용(자료: 2024년 보건복지부 사업설명자료)

16) 0~2세반은 각각 기준정원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0세반의 경우 담임교사인건비 지원금

보육료와 연령반별 기관보육료 차액을 추가재정소요로 추정함

- 이를 바탕으로 추계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표 5] 장애영유아 보육제공 등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관련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인건비지원어린이집(전문·통합) 누리과정반 보조율 상향	2,828	2,743	2,669	2,596	2,564	13,400	2,680
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통합일반)	4,638	4,468	4,337	4,248	4,229	21,920	4,384
합 계	7,466	7,211	7,006	6,844	6,793	35,320	7,064

주: 1) 인건비지원 장애전문·통합어린이집 누리과정반에 1명이 재원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를 80%지원할 경우 가정

2) 인건비미지원장애통합어린이집 1세이상반에 1명이 재원하더라도 보육교사인건비를 지원할 경우 가정

3) 인건비미지원일반어린이집 각 반에 1명이 재원하더라도 장애아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현행 제도를 기반으로 추계한 것으로 제도설계가 변경되는 등 가정이 변경될 경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변경될 수 있음

액(21,480천원/연=1,790천원×12월)보다 정원충족시 기관보육료 금액(22,644천원=629천원×3명)이 더 크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1세반 이상의 경우에 대하여 계산하였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